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바이오헬스) 학사 운영규정

제 정 202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공유대학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수강 및 성적 등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바이오헬스)’이란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국내 7개 대학(단국대학교, 대전대학교, 동의대학교, 상명대학교, 우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원광보건대학교, 홍익대학교)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공유대학(바이오헬스 컨소시엄) 지원 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교육과정 공동 운영 대학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바이오헬스)’을 ‘공유대학’이라 하며, 참여 대학을 ‘각 대학’이라 한다.

제3조(교육과정) ① 공유대학의 교육과정은 본교 「학칙 제26조 내지 제27조」 및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5항」에 의하여 특별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② 공유대학 과목의 이수 구분은 교양 또는 전공으로 하며, 과목당 편성 학점은 2학점 또는 3학점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정이 전공 교육과정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공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4조(과목의 개설) ① 공유대학의 과목 개설 시기는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로 하며, 학반·폐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대학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② 공유대학 과목의 수업은 이론, 실험·실습, 이론·실습 병행으로 구분하며, 집중식 블록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신청 자격 및 신청 절차) ① 공유대학의 수강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② 공유대학 과정 신청 및 이수 등의 절차는 본교 「국내 타 대학 등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수강신청) 공유대학의 수강신청 가능 학점은 학기별 최대 6학점 이내로 하며, 공유대학의 수강 학점을 포함하여 본교 「학칙 제33조2항」에서 정한 학기별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수업 및 이수) ① 공유대학의 수업 및 이수는 공유대학 통합 운영 플랫폼(단국대학교 주관)을 통해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대학별 주관 과목의 경우 해당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다.

② 공유대학 사업 기준에 따라 공유대학 과목의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하여 매 1,2학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6시까지는 ‘공유DAY’로 정하고 해당시간에 공유대학 개설 과목을 우선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공유대학의 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유대학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8조(성적 처리 및 학점 이수) ① 공유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본교 과목 성과와 합산하여 학기별 성적 및 전체 성적 산정에 반영한다.

② 공유대학에서 이수 가능한 학점의 범위는 본교 「학칙 제29조」 및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총 졸업학점의 1/3이내로 한다.

③기타 공유대학의 성적 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유대학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부전공 및 복수전공의 인정) ①공유대학의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과정을 이수한 경우 본교 「학칙 제30조 및 제30조의2」에서 정한 부전공(트랙 포함) 또는 복수전공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기타 공유대학의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의 명칭 및 이수 학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유대학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이수구분별 이수인정) ①공유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공유대학의 이수구분에 상관없이 취득한 학점 범위 내에서 본교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 제19조제4항 ‘별표1’」에서 정한 이수 구분별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이수 인정을 받은 과목의 학점은 이수한 과목의 이수 구분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수인정) 공유대학 교과목을 담당한 경우 교과목 시수의 1.5배를 인정하며, 이를 본교 책임시수 및 초과 강사료 산정에 반영한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이 규정은 2021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교과목부터 적용한다.